

의안번호	제 71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24일

#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 번호	715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2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 이유

-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안 제3조)
  -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7조)
  -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함
- 생활임금의 장려(안 제8조)
  -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4. 도의 공사, 용역 사업에 있어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2. 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5. 그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도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견서

- 우선 조례안에서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법률위임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공공부문은 법률 위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공부문만 먼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도 소속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나아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 특히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sup>1)</sup>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부문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도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생활임금 도입은 민간영역인 일반사업장의 임금인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증가시켜 결국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소기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2015년 충북의 최저생계비 미만을 버는 도소매업자가 49.04%,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은 53.14%로 나타냄( '15년 최저생계비 : 1인 617,281원, 2인 1,051,048원, 3인 1,359,688원, 4인 1,668,329원)



-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 경제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